

서울특별시 2025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(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) 변경 의견청취안

의안 번호	3159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2년 3월 10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國·市 공동발표한 「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('18.12.19)」 및 市에서 발표한 「8만호 추가 공급의 세부계획('18.12.26.)」에 따라
- 나. 재개발구역(도시정비형)내 '주거 주용도' 허용 및 상업지역 주거비율 완화(50%→90%), 준주거지역 용적률(400%→500%) 상향을 '19.10.17.부터 3년 한시로 운영 중으로
- 다.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기본계획의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여 관련 기본계획의 변경에 앞서
- 라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6조에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주택공급확대를 위한 3년 한시 기본계획 변경사항의 유효기간 연장
- 유효기간 : '22.10.16.까지 적용 → '25.3.27.까지 적용
 - 동일 취지로 '21.12. 개정·공포된 도시계획조례 연장기한과 동일
- 나. 주택공급이 저조한 한양도성도심부는 공공주택 확보의무 배제

3. 추진경위

- '19. 1.25. 2025 기본계획 변경방침 수립(도시재생실장)
- '19. 2.~6. 주민·시의회 의견청취 및 관계부서 협의
- '19. 7.~9. 도시계획위원회 개최(본위원회 2회, 소위원회 1회)
- '19.10.17. 주택공급관련 2025 기본계획 변경고시(서고2019-42호)
- '22. 2.28. 주택공급확대 유효기간 연장방침 수립(도시재생실장)
- '22. 3. 3. 2025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의견청취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 및 제6조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기 타 : 의견청취사항

※ 작성자 : 도시활성화과 도시활성화정책팀 배현경 (☎2133-4635)